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년 10월 14일]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사항은 홈페이지(http://pajuunjeong-honorsville.kr) 및 해당 공고문 전문(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파주시 주택과 - 41776호(2022.10.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A48BL 공동주택역외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15층 8개동 총 457세대 중 일반분양 457세대 [특별공급 286세대(일반/기관추천) 45세대, 다자녀가구 45세대, 신혼부부 91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9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분양권 제한 및 거주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년간 전세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여 3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됩니다.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674	01	059.5855A	59A	59.5855	24.4779	84.0634	53.0196	137.0830	53.6065	138	14	14	28	4	28	88	50	10
		02	059.9772B	59B	59.9772	24.5919	84.5691	53.3680	137.9371	53.9589	146	14	14	29	4	29	90	56	10
		03	084.2340A	84A	84.2340	24.4098	108.6438	74.9520	183.5958	75.7817	85	8	8	17	3	17	53	32	6
		04	084.8869B	84B	84.8869	24.5376	109.4245	75.5330	184.9575	76.3691	88	9	9	17	3	17	55	33	6
합 계											457	45	45	91	14	91	286	171	32

II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금액			계약금							잔금
				대지비 (A)	건축비 (B)	계 (A+B)	1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	10%	10%	10%	10%	10%	10%	
59A	138	1~2층	10	122,871,070	236,128,930	359,0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107,700,000
		3~4층	20	122,871,070	244,928,930	367,800,000	36,780,000	36,780,000	36,780,000	36,780,000	36,780,000	36,780,000	36,780,000	110,340,000
		5층	10	122,871,070	252,828,930	375,70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112,710,000
		6층	10	122,871,070	260,728,930	383,60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115,080,000
		7층	10	122,871,070	264,628,930	387,50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116,250,000
		8~9층	20	122,871,070	268,628,930	391,50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117,450,000
		10층 이상	58	122,871,070	272,628,930	395,50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118,650,000
		1~2층	18	123,678,793	238,221,207	361,90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108,570,000
		3~4층	20	123,678,793	246,321,207	370,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1,000,000
		5층	10	123,678,793	254,221,207	377,900,000	37,790,000	37,790,000	37,790,000	37,790,000	37,790,000	37,790,000	37,790,000	113,370,000
59B	146	6층	10	123,678,793	262,221,207	385,900,000	38,590,000	38,590,000	38,590,000	38,590,000	38,590,000	38,590,000	38,590,000	115,770,000
		7층	10	123,678,793	266,221,207	389,90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116,970,000	
		8~9층	20	123,678,793	270,221,207	393,90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118,170,000	
		10층 이상	58	123,678,793	274,121,207	397,80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119,340,000	
		1~2층	58	173,698,663	276,301,337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3~4층	12	173,698,663	286,201,337	459,900,000	45,990,000	45,990,000	45,990,000	45,990,000	45,990,000	45,990,000	137,970,000	
		5층	6	173,698,663	296,101,337	469,80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140,940,000	
		6층	6	173,698,663	306,001,337	479,700,000	47,970,000	47,970,000	47,970,000	47,970,000	47,970,000	47,970,000	143,910,000	
		7층	6	173,698,663	310,901,337	484,600,000	48,460,000	48,460,000	48,460,000	48,460,000	48,460,000	48,460,000	145,380,000	
		8~9층	12	173,698,663	315,901,337	489,600,000	48,960,000	48,960,000	48,960,000	48,960,000	48,960,000	48,960,000	146,880,000	
84A	85	10층 이상	34	173,698,663	320,801,337	494,500,000	49,450,000	49,450,000	49,450,000	49,450,000	49,450,000	49,450,000	148,350,000	
		1~2층	12	175,045,006	278,154,994	453,20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135,960,000	
		3~4층	12	175,045,006	288,154,994	463,200,000	46,320,000	46,320,000	46,320,000	46,320,000	46,320,000	46,320,000	138,960,000	
		5층	6	175,045,006	298,154,994	473,200,000	47,320,000	47,320,000	47,320,000	47,320,000	47,320,000	47,320,000	141,960,000	
		6층	6	175,045,006	308,054,994	483,10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144,930,000	
		7층	6	175,045,006	313,054,994	488,10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146,430,000	
		8~9층	12	175,045,006	318,054,994	493,100,000	49,310,000	49,310,000	49,310,000	49,310,000	49,310,000	49,310,000	147,930,000	
		10층 이상	34	175,045,006	323,054,994	498,10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149,43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KB국민은행	393301-04-095941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이 없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므로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확인되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에서 현상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지는 않습니다.) (예시 : 101동 301호 계약 시 "1010301김정남")
-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전자등기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지는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및 확장 비용 납부계획**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획 및 제품 등에 관한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공고상 타입)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자정기일)	비고
59A	7,200,000	720,000	6,480,000	
59B	7,200,000	720,000	6,480,000	
84A	8,600,000	860,000	7,740,000	
84B	8,600,000	860,000	7,740,000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획	KB국민은행	393301-04-095954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II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10월 24일(월)	10월 25일(화)	10월 26일(수)	11월 2일(수)	11월 18일(금) ~ 11월 21일(월)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건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당사 건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63)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당일 오전 12시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II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천청약)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공무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잔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잔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전용면적)</th> <th>파주시 및 경기도</th> <th>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전용면적)	파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전용면적)	파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VI 일반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자격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재(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파주시 거주자(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함.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